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치안 유지, 헌법적 가치의 충돌과 균형에 관한 논의 - 헌법재판소 2021년 5월 20일 n°2021-817 결정을 중심으로 -

> 프랑스 파리 낭테르 대학교 유럽 비즈니스 법학 석사 과정 김도경



1. 들어가며

18세기,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왕정에 맞서 민중이 이끄는 대혁명을 통해 국가 구성원인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프랑스의 역사는 현재진행형이다. 남녀노소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집회와 시위라는 단체행동을 통해 국가 권력의 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내는 문화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문화로 세계인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 영토에서 많은 희생자를 낸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사회

지안 문제가 급부상하고, 크고 작은 시위에서 잇따라 나타나는 폭력적인 상황과 파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마약 유통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정치권 내에서 사회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한편, 2018년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상안에 대한 반대로 시작된 '노란 조끼 시위'가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확산되며 시위대에 대한 경찰 진압이 폭력적이었다는 여러 증언과 비판이 터져 나오며 경찰의 권한이 특정 상황에서 남용될 수있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 경찰 마크를 단 한 남자가 시위대를 과격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에서 퍼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해당 남성이실제 경찰이 아닌, 경찰을 사칭한 알렉상드로 베날라(Alexandre Benalla)라는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측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 사칭에 대한 강한 비판 여론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감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치안이 불안정한 파리 근교를 중심으로 경찰의 인종차별적인 심문과 체포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을 증언하는 희생자들의 목소리가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게되며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런 정세 속에서 2020년 10월 20일, 여당 LREM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찰의 권한과 권력을 강화하고 경찰 구성원을 보호하며 감시 카메라 체계를 이용한 범죄 예방 방안을 담은 의원 입법안(proposition de loi)이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안의 주축이 된 여당 의원들은 입법안에서 "오늘날 프랑스인이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불안전은 흔히 대중교통에서 볼 수 있는 몰상식한 행동부터도심에 위치한 내 집 아래에서 일어나는 마약 거래나 심각한 수준의 단체 난투극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며 갈수록 높아져 가는 무질서와 폭력을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로 꼽았다. 경찰 노조도 해당 법안 제출을 환영하며 "많은 경찰들이 근무 도중 다치고 개인적인 삶과 가족과의 삶에 있어서 경찰이라는 신분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며 "특히 소셜 미디어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경찰 구성원에 대한 혐오 표현과 살해 위협에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책임감을 통감해야 한다."2)며 밝혔다. 하지만 국내외

¹⁾ 의원 제출안 첫 번째 문단.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textes/115b3452 proposition-loi

²⁾ Stanislas Gaudon 경찰 노조 위원장의 인터뷰 https://www.francetvinfo.fr/faits-divers/police/proposition-de-

여러 인권단체와 특히 언론인 단체는 경찰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민의 기본 권을 제한할 것이라며 거센 비판을 했다. 특히 2020년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미셸 바쉘레뜨(Michelle Bachelet) 유엔인권고등판무관(Haute-Commissaire des Nations Unies aux droits de l'homme)은 프랑스의 해당 입법안에 대 하여 "그룹 전체에 상처를 낼 수 있는 조치"라며 "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프랑스에 촉구했다.3 프랑스 기자 단체 연합도 2020년 11월 성명서4)를 통해 해당 법안이 "경찰 구 성원의 이미지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의 진짜 목적은 "기자들의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리고 해당 법안이 통과 되어 공포된다면 이는 결국 "작전 중인 경찰을 촬영하 는 모든 기자들이 체포되어 구금되고 재판에 넘겨질 것"이며 "오직 판사만이 기자가 불순한 의도로 이미지를 촬영하였는지 아닌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2020년 10월 20일 하원에 제출된 해당 의원 입법안은 정부의 요청으로 신속한 입법 절차를 밟게 되었다. 해당 입법안은 2020년 11월 17일에서 20일 사이에 하원에서 검토되었고 11월 24일 하원에서 통과 되었다. 이어 해를 넘긴 2021년 3월 상원에서 검토되었고 하원과 상원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동수위원회(Commission mixte paritaire)가 조직되어 합의점을 찾기 위한 대화가 계속되었다. 3월 29일 동수위원회에서 상원과 하원은 합의점을 찾았고 모든 절차를 거친 해당 입법안은 결국 4월 15일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하원에서 찬성 75표 반대 33표로 통과되었다. 이에 해당 법률을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90명의 상원의원과 87명의 하원의원, 그리고 '모든 의혹을 풀기 위하여'장 카스텍스(Jean Castex) 수상이 헌법재판소에 사전적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였다. 이에 답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에 대해

loi-securite-globale-il-n-y-a-aucune-atteinte-liberticide-au-droit-et-a-la-loi-de-la-presse-assure-le-syndicat-allianc e-police 4184543.html

³⁾ https://www.lefigaro.fr/flash-actu/la-haut-commissaire-aux-droits-de-l-homme-de-l-onu-interpelle-la-france-sur-l a-discrimination-de-minorites-et-les-violences-policieres-20201209

⁴⁾ https://www.snj.fr/article/une-proposition-de-loi-sécurité-globale-contre-la-liberté-de-la-presse-2111388983

2021년 5월 20일 해당 법안에 대한 결정5)을 내렸다.

2. 자유를 지켜주는 포괄적 안전을 위한 법률(LOI n° 2021-646 du 25 mai 2021 pour une sécurité globale préservant les libertés)의 주요내용

사회적 치안 유지와 기본권 보호라는 두 헌법적 가치의 충돌이라는 주제에 집중하기 위하여 본 글에서는 해당 법률의 여러 조항 중에서 사회적으로 논의 가 활발했던 다섯 가지 조항 즉, 자유를 지켜주는 포괄적 안전을 위한 법률(이하 '해당법률'이라고 함) 제41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에 한하여 다루도록 하겠다.

먼저 제41조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추방 전까지 유치센터에 체류하게 되는 '행정적 유치(rétention administrative)'와 경찰 수사를 위해 범죄 의심이 있는 사람을 임시적으로 구금할 수 있는 '보호 유치(garde à vue)' 동안 내무부장관이 법에서 정한 조건과 목적에 한하여 비디오 감시 시스템을 시행할 수있고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책임자가 행정적 유치 혹은 보호 유치 중인 개인에 비디오 감시 시스템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디오 감시 시스템은 (i) 해당 수감자가 탈출을 시도할 수 있거나 스스로 혹은 타인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ii) 행정적 유치혹은 보호 유치 기간 동안 발생한 일에 대하여 사법 혹은 행정 절차에서 증거수집을 하는 목적일 때 적용할 수 있다. 비디오 감시 시스템은 48시간 동안적용 가능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수감자에 비디오 감시 시스템이 적용되는 경우와 연장되는 경우 그 즉시 관할지 담당 검사에게 알려야 하며 담당 검사는 언제든 비디오 감시 시스템의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탈출 위험 혹은 위협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에 비해 비디오 감시 시스템이 반드시

⁵⁾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decision/2021/2021817DC.htm

필요하거나 적절한 수단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비디오 감시 시스템에서 특정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닌 대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특징과 대상자마다 행정적 유치 혹은 보호 유치에 처하게 된 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 법률에서 명시한 비디오 감시 시스템 시행 목적이 너무 일반적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됐다.

두 번째로 제45조의 경우, 경찰 개인이 카메라를 소지하여 촬영할 수 있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카메라로 촬영이 시작될 경우 이를 알리는 시각적으로 구체적인 신호를 반드시 나타내야 하고 상황이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촬영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해당 조항은 경찰 개인이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경찰의 안전 혹은 재산이나 사람에 대한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특정하고 있다. 촬영된 영상은 실시간으로 상부에 전달될 수 있으며 (i) 범인을 잡기 위한 목적, (ii) 사회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 (iii)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개인 카메라를 지급받은 경찰 구성원은 본인이 촬영한 이미지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의원들은 개인 카메라를 지급받고 촬영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 구성원들이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거주지 등 개인 사유지 역시 촬영할 수 있고 촬영된 이미지에 대한 접근 권한이나 접근 사유 등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동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제대로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개인 카메라로 촬영중인지 아닌지 촬영 당한 사람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해당 이미지에 접근 권한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접근 권한을 가진 경찰과 비교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고, 향후 이미지가 다른 사건에 증거로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변호의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주장했다.

세 번째로, 제47조의 경우, 국가 기관이 무인항공기(aéronefs circulant sans personne à bord)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i)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 하는 범죄인 경우, (ii) 작전을 위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방법 외에는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거나 작전 중인 요원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상황인 경우, (iii) 정해진 기간과 범위, 해당 범죄 행위에 한해서 담당검사 혹은 수사 판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 (iv) 테러리즘 행위를 예방하는 경우, (v)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시위 혹은 모임의 안전과 치안 유지를 위해 무인항공기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가능한 방법이 없는 필수적인경우, (vi) 폭력, 절도, 무기나 마약의 암거래 등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된 지역에서 개인 혹은 재산의 안전에 위해가 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에서 국가 기관은 국가 안보와 내부 안전을 위하여 무인항공기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한 이미지를 수집하고 저장하며 전송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 의원들은 해당 조항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사법적 영역 혹은 행정적 영역에서 국가 기관이무선 항공기에 부착된 카메라로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사실상 지나치게 광범위 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선항공기 카메라 장치가 필수적인 상황이 아닌 국가 기관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남용의 위험을 대비한 법적인 안정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 해당 장치의 사용 기한과 사용 범위의 한계를 정하지 못한 점, 카메라로 수집된 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을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예로 들며 해당 조항이 사회적 치안 유지라는 목적에 비해 개인의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 같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의원들은 무선항공기에 부착된 카메라로 시위 현장을 촬영할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네 번째로 제48조는 무인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이동 수단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이동 수단 내 혹은 공공장소, 건물의 입구를 포함한 건물 내부 등의 이미지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을 공공 기관에 부여한다. 이 권한은 작전 중 사고 방지, 범죄 사실 확인, 범죄 행위의 증거 수집, 공공장소에서 시위 혹은 모임의 안전 보장, 국경 혹은 강과 같은 수로를 따라 감시, 교통량 감시 혹은 화재 예방, 인명 구조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 공공 기관은 특정 신호를 사용하여 카메라가 부착된 이동 수단의 존재를 현장에 있는 대중에 알려야 하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나 고지가작전의 목적에 배치될 경우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카메라가 부착된 이동 수단의 사용이 중대 범죄 사실 확인과 예방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또 카메라 사용을 대중에 알릴 의무에 대한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아 헌법에서 요구하는, 법률은 분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시민 사회와 여론의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제52조는 형법에 새로운 조항, 제226-4-1-1조를 삽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은 경찰 구성원이 작전 중, '경찰 구성원들의 정신적 혹은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는 노골적인 목적으로 그들의 신원을 특정하도록 선동하는 행위(la provocation, dans le but manifeste qu'il soit porté atteinte à son 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à l'identification d'un agent de la police nationale, d'un militaire de la gendarmerie nationale ou d'un agent de la police municipale lorsque ces personnels agissent dans le cadre d'une opération de police)'를 5년의 징역형 또는 75,000 유로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 구성원의 배우자 혹은 동반자, 연인, 자녀에 대한 신원을 특정하도록 선동하는 행위' 역시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 이 조항의 경우 특히 그동안 시위나 집회 등의 현장에서 시위대에 심각한

폭력을 가하는 경찰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또는 언론이 집회 현장을 촬영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조항이 처벌하는 '경찰 구성원의 신원을 특정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 할 수 있다는 우려의대상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경찰 권한을 강화하면서 반대로 강력해진 경찰 권한을 제어할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반대의견을 가진 의원들 역시 해당 조항이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 제8조와 1958년 헌법 제34조에서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 즉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구성요건의 정의가 분명하지 못하며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특히 '정신적인 위해'라는 표현과 '신원을 특정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라는 표현 자체가 불명확하고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해당 조항에서 처벌하는 행위가확장된 해석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위에서 경찰 구성원을 촬영하는 행위만으로도 언론인 혹은 시위 참가자의 체포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며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주요 비판의 대상이 된 이 다섯 가지 조항은 모두 공권력 확립과 사회적 치안, 안전 유지라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치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이자 또 다른 헌법적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과연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의문점을 던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3. 해당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 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최근 테러 등 사회적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진 한편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

되는 경찰 국가화를 우려하며 법 제정을 반대하는 크고 작은 시위들도 해당 법률 제정 과정에서 꾸준히 일어났다. 찬성과 반대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집단 사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가치 충돌에 있어 균형을 찾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제41조에서 해당 시설을 책임지는 사람의 단독 결정으로 최초 48시간동안 행정적 유치 혹은 보호 유치 대상자에게 비디오감시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도 오직 해당 담당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비디오감시 조치 연장 결정에 있어 담당 검사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결정에 대한 알림의 의무만 있을 뿐이고 기간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닌 대상자가 유치 시설에 있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당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는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보호 조치의 경우 상황에 따라 최대 6일 까지 지속이가능하고 행정적 유치의 경우 기간에 제한이 없는 점을 근거로 들며 해당 조항이 사회 치안 유지를 위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두 번째로, 경찰의 개인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에 대한 제45조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위헌 심판을 제청한 의원들의 주장에 대답하기 위하여 근거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 번째로 해당 조항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에는 경찰의 개인 카메라 사용은 일반적이고 무제한적인 사용을 방지하고 사회적 치안 유지를 위해 법률로 특정하는 목적과 상황으로 제한적이라는 점,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카메라를 상대방의 눈에 보이게 들고 있어야 하며 시각적인 표시를 동반하도록 하는 점, 내무부 장관이 직접 경찰의 카메라 사용에 관해 국민을 상대로 포괄적인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는 점, 상황이 카메라 사용 고지를 금지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카메라 사용 목적과 별 개로 순수한 기계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로 제한된다는 점을 근거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이어 해당 조항이 자기변호의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개인 카메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고,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촬영 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고지 받을 수 있고, 사법 당국이 경찰의 개인 카메라 사용으로 증거 수집 중 불공정 행위가 없었는지 여부 및 증거에 대한 능력을 직접 판단할 수 있다는 점, 촬영 당사자 경찰이 해당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몇몇 필수적인 경우로 제한적이라는 점, 해당 조항이 촬영된 이미지를 생략 혹은 수정되지 않은 본래 그대로의 상태로의 보존과 이미지 열람 흔적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점에 비추어자기변호의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결정에서 이미지 본래 그대로의 상태로의 보존과 이미지 열람 흔적에 대한 추적 시스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이미지의 삭제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조건부 의견(réserve)을 남겼다. 이를 종합하여 헌법재판소는 경찰 구성원이 개인 카메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45조에 대하여 조건부 의견과 함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세 번째로, 국가 기관이 무인항공기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제47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한 감시 장치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주목했다. 헌법재판소는 무인항공기라는 장치가 가지고 있는 이동성과 높은 항공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장치가 상대방이 그 존재를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넓은 지역 안에서 상당한 수의 사람들의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이동을 추적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감시 시스템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동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해당 법 조항에서 무인항공기 카메라를 이용한 감시 시스템 사용에 기간적 혹은 지역적 제한을 명시 하지 않은 점과 사용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 카메라의 개수도 전혀 제한적이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어떠

한 법적 보호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해당 조항에서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시위 혹은 모임의 안전과 치안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인항공기 카메라 감시 시스템 외에 다른 방법이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카메라 감시는 전혀 필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지적을 바탕으로 해당 조항이 사회적 치안 유지라는 목적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네 번째로 카메라가 부착된 이동 수단의 사용에 관한 제48조에 관하여 헌법 재판소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의원들의 주장을 인용하며 카메라가 부착된 이동 수단을 이용한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상황 자체가 대중에게 알려야할 의무를 허용하지 않거나, 대중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해당 조치를 사용하는 목적에 반 대될 경우'라는 예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누락되었다며 이는 예외 사 항의 남용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서 무인항공기에 부착한 카 메라를 이용한 감시 시스템에서 밝힌 바와 비슷한 맥락으로 카메라가 부착된 이동 수단을 이용한 감시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제48조에는 해당 감시 시스템의 최대 허용 가능 기간, 사용 가능 한 구역의 제한 등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제재도 마련해 놓지 않은 점 을 지적했다. 또 해당 감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의 허가를 받 거나 고지 의무를 가지는 것이 아닌, 경찰 구성원 단독의 결정으로 감시 시스 템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결 국 헌법재판소는 이 모든 이유로 인해 제48조 카메라가 부착된 이동 수단을 이용한 감시 시스템이 사회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가장 논란이 된 '경찰 구성원의 신원을 특정하도록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먼저 해당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을 언급했다. 경찰

구성원의 신원을 특정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i) 해당 경찰 구성원이 경찰로서의 임무 중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경찰 구성 원의 신원을 특정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경찰 구성원에 대한 신 체적 혹은 정신적 위해를 가하려는 '노골적인 목적'을 가져야 한다. 헌법재판 소는 이 두 가지 범죄의 구성요건 중 첫 번째 구성요건에 대해 법률로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경우 구성요건에 대한 확대해석이 불가능하도록 법률 로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정의해야 하지만 해당 조항에서는 '경찰로서의 임무 중에 있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제한적 정의를 누락하였다고 확인했 다. 그리고 두 번째 구성요건에 관하여 경찰 구성원에 대한 신체적 혹은 정신 적 위해를 가하려는 '노골적인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이 경찰 구성원의 신원을 특정하도록 선동하는 행위와 별개로 구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밝혀야 할 부 분이 부재한다며 결국 해당 행위자의 의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구성요건 으로서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즉, 제52조에 명시된 표현이 경찰의 신원이 밝 혀지도록 선동을 한 행위 자체가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내포 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신원이 밝혀지도록 선동을 한 행위 와 함께 해당 경찰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도록 유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이다. 첫 번째 상황이라 면 의도를 내포한 선동이라는 한 가지 행위를 가리킬 수 있지만 두 번째 상황 이라면 신원이 밝혀지도록 선동을 한 후에 위해가 가해지도록 유발을 했다는 점에서 연속되는 두 가지 행위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이러한 해당 조항의 불분 명함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제52항에 대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특정하 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함으로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4. 나가는 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앞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국가정보자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 역시 상원의 제청으로 문제가 된 조항들에 대해 2021년 1월 26일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먼저 무인항공기에 부착된 카메라로 작동하는 감시 시스템에 대하여 '긴 기간 동안 촬영 대상자 몰래 개인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다'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드론을 이용한 감시 시스템은 (i) 반드시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에 비추어 사용에 대한 철저한 필요성이 제기될 때, (ii) 적절한 수준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찰 개인의 카메라사용에 관하여 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실행하는 행정부 차원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대중에 공개하는데 있어 상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개인의신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영상에 처리를 하는 등 익명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직무상의 이유로 소방서, 수감기관 등에 이미지를 공유해야 할 경우 기관 공동의 내부적 사용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동수단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한 감시 시스템의 사용에 대하여 위원회는 집행기관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적 자각이 필요하다며 해당 조항의 집행 과정에서 특히 음성 녹음을 제외하는 등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부분적 위헌 결정이 난 후 경찰의 총 책임자인 제라드다르마낭 (Gérald Darmanin) 내무부 장관은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하며 정부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도와 줄 수 있는 많은조항들이 합헌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축하하며 헌법재판소가 조건부 의견을 낸 조항들에 대해 보완할 것을 수상에게 건의할 것이다"며 의견을 밝혔다.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입장을 보였던 언론인 단체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빼트리스 스피노지(Patrice Spinosi) 국경 없는 기자회(RSF)를 대변하는 변호사는 르몽드와의 인터뷰⁶⁾에서 "제대로 된 승리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피하기 위하여) 정부는 문제가 된 제52조를 다시 쓰기까지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피

⁶⁾ https://www.lemonde.fr/societe/article/2021/05/20/le-conseil-constitutionnel-censure-l-ex-article-24-de-la-propos ition-de-loi-securite-globale_6080897_3224.html?fbclid=IwAR0q2z74JE5r3eio-7zxsyBZZ4ahX1mgQL2dvVSy G1xZYhxT4oEy3XQ2Z5Y

해가지 못했다. 입법안의 텍스트는 여전히 불명확했다. 언론의 자유는 제대로 된 법적 보장 없이는 절대 축소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다.

드론, 인공지능, 안면인식 시스템 등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개인의 일거수일 투족을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더불어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에 공권력이 받는 유혹 역시 더욱 달콤해지고 있다. 효과적인 치안 유지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우리는 잠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자유로운 표현을 할 권리, 언론의 자유를 잠시 내려놓고 감시 시스템을 점점 더 받아들일 것인가? 그 균형을 찾는데 있어 첨단기술이 함께하는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를 위하여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끝없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